

등록번호 제 호

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

[기본: 소농직접지불금()·면적직접지불금()] ※() 해당란에 “○”표시

등록 신청인	성명 (법인명)	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			
	주소			전화번호				
입금계좌	은행명			계좌번호				
농지등 소재지			농지등 소유자	기본직접지불금 (소농직접지불금·면적직접지불금)				
읍·면	리·동	지번 (임사지번)		합계	농촌진흥 지역 안(㎡) (논+밭)	농촌진흥지역 외의 지역(㎡) 논 밭		농지등이용면적(㎡) 작물재배 휴경
합계								

위 등록신청인은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3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[소농직접지불금()·면적직접지불금()]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
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

- *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합니다)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등 등록사항이 변동되면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농지 등 소재지 관할 읍·면·동장)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.
- * 기본직접지불금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고, 법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면 해당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*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수령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에 따른 부당이득금·제재부가금·가산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, 법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* 이 등록증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